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 가. 발 의 자 : 박성연 의원 외 28명
- 나. 의안번호 : 제 750 호
- 다. 발의일자 : 2023. 5. 26
- 라. 회부일자 : 2023. 6. 5

2. 제안이유

-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 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 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4조).

다. 공사상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라. 공사상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순직소방공무원의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순직소방공무원 유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공사상소방공무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나. 예산조치 : 원안 참조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이 재난 및 화재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 중
에 순직 혹은 부상을 당한 경우 그 당사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규
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다
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추모사
업 및 복지 차원의 지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배려이자 긍지와 자
부심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는 바임.

[표 1] 조례안 주요내용

조 문 별	주요 내용
제1조(목적)	·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 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 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함.
제2조(정의)	· 공사상소방공무원(순직소방공무원과 공사상소방공무원)을 정의함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 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름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 공사상소방공무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규정함. 1.배우자, 2.자녀, 3.부모, 4.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제5조(시장의 책무)	1. 공사상소방공무원과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노력의무 2.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재원의 확보 노력의무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 공사상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 1. 소방공무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 2. 공사상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 3.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 4.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시책 5.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조치계획 등

제7조(순직소방공무원 추모사업 지원)	· 예산의 범위에서 순직소방공무원의 추모사업 지원
제8조(순직소방공무원 유족 지원)	· 순직소방공무원 유족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1. 자녀의 장학금 지원 2. 유족의 건강검진 지원 3. 지원 규모와 절차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제9조(취업·창업 지원)	1. 진로·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 2. 창업 상담, 창업 교육 등의 사업 실시 가능
부칙	(적용례) 제7,8,9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사망한 순직소방공무원도 적용

■ 서울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현황

- 최근 3년간 서울소방재난본부 출동 현황을 보면, 연평균 화재는 5천 145건, 구급은 55만 153건, 구조는 18만 4,694건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며,

[표 2] 서울소방재난본부 최근 3년간 출동 통계

구분	화재진압				구급활동			구조활동	
	건수	사망	부상	재산피해	출동건수	이송건수	이송환자	출동건수	구조인원
총계	15,435	111	841	52,300	1,650,459	926,641	927,350	554,082	43,893
연평균	5,145	37	280	17,433	550,153	308,880	309,117	184,694	14,631
1일평균	14	0.1	1	48	1,507	846	847	506	40
2022	5,396	37	325	16,593	620,849	337,759	337,937	213,372	19,371
2021	4,951	37	280	18,268	551,647	312,411	312,686	196,860	12,513
2020	5,088	37	236	17,439	477,963	276,471	276,727	143,850	12,009

- 1946년부터 현재('22.12월)까지 소방활동 중 사망하거나 다친 순직·공상자 현황을 보면, 순직자는 총 88명(소방활동 45명(화재39, 구조구급4, 생활안전1, 교육훈련1), 기타 43명¹⁾)이며, 공상자는 총

1) 순직(기타)의 세부내역

- 비상근무·순찰·소내 근무 중 청사 내 업무상 과로 순직(28), 망루근무 중 추락 순직(1)
- 공기호흡기 충전작업 여과기 파열로 인한 순직(1), 청사 순찰, 퇴근 중 교통사고 순직(4),
- 근무중 동료의 휘두른 칼에 찔려 순직(1)

2,630명(소방활동 1,733명, 그 외 897명)에 이르고 있음.([표 3]참고)

- [표3]에서 알 수 있듯이 순직자의 경우는 발생 현황이 불규칙하나, 공상자의 경우는 2017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임.

[표 3] 순직 및 공상자 현황(1946년 ~ 2022년)

(명)

구분	합계	순직			공상	공상 세부내역												
		소계	소방 활동	기타		소방활동						소방활동 이외						
					소계	계	화재	구조	구급	생활 안전	교육 훈련	계	일상 업무	출퇴근	질병	체력 단련	기타	
계	2,718	88	45	43	2,630	1,733	280	102	319	29	113	897	214	120	44	72	78	
2022	177	3	0	3	174	117	36	13	47	7	14	57	21	17	12	4	3	
2021	150	1	0	1	149	93	32	13	38	2	8	56	23	19	6	2	6	
2020	193	1	0	1	192	107	32	5	54	1	15	85	39	20	2	8	16	
2019	172	1	0	1	171	99	34	13	30	6	16	72	26	11	5	15	15	
2018	160	0	0	0	160	98	38	11	34	4	11	62	22	12	8	11	9	
2017	151	0	0	0	151	82	28	14	27	4	9	69	31	9	3	11	15	
2016	78	1	0	1	77	48	12	3	19	1	13	29	16	3	1	4	5	
2015	72	0	0	0	72	52	15	11	21	1	4	20	7	6	4	3	0	
2014	55	1	0	1	54	41	11	10	9	1	10	13	6	5	0	1	1	
2013	47	0	0	0	47	30	16	4	8	0	2	17	7	4	0	3	3	
2012	55	0	0	0	55	28	9	2	10	0	7	27	8	9	1	5	4	
2011	69	0	0	0	69	48	17	3	22	2	4	21	8	5	2	5	1	
2010	63	2	2	0	61	39	2011년부터 공상 세부내역 분류함					22	2011년부터 공상 세부내역 분류함					
2009	47	0	0	0	47	31						16						
2008	61	3	3	0	58	43						15						
2007	51	0	0	0	51	29						22						
2006	70	2	2	0	68	37						31						
2005	56	1	0	1	55	41						14						
2004	53	2	2	0	51	36						15						
2003	58	4	0	4	54	36						18						
2002	51	1	0	1	50	33						17						
2001	54	7	6	1	47	31						16						
2000 이전	775	58	30	28	717	534						183						

- 간암(2),심근경색(1), 폐암,(2) 업무상 스트레스 자살(1), 비호지킨림프종(1), 우울증(1) 질병으로 인한 순직

■ 주요골자별 의견

가.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안 제2조는, “공사상소방공무원”의 해당 범위를 규정하면서 세부적으로 “순직소방공무원”과 “공상소방공무원”으로 분류해 조례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음.
- 먼저 “공사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부터 제16조의32)까지에 규정되어 있는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등의 직무 수행 활동과 동법 제17조3)에 따른 소방교육·훈련 활동

2)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이하 이 조에서 “소방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2.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4.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5. 삭제 (2015. 7. 24.)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② ~ ③ (생략)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 제거 활동(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생활안전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2.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3.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4.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5.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② ~ ③ (생략)

3) 제17조(소방교육·훈련)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어린이집·유치원·

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4)에 따라 공무상 부상·질병이 인정된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 사망자의 경우는 “순직소방공무원”으로, 부상 및 질병자의 경우는 “공상소방공무원”으로 약어규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본 조례안에서 순직 및 공상공무원에 대한 지원 내용에 상이한 부분이 존재함에 따라 그 적용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 하겠음.

나. 유족 및 가족의 범위 (안 제4조)

- 안 제4조는,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지원을 받게 되는 공사상 공무원의 유족과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

학교의 장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 발생 시 피난 및 행동 방법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 및 대상자, 그 밖에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1. 공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공무상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
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공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나. 공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직장 내 괴롭힘(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마.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 ⑥ (생략)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로 규정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유족이라 하면 민법 제767조5)에 따른 사망자의 배우자, 혈족⁶⁾ 및 인척을 말하며 구체적 범위는 배우자, 8촌 이내의 부계 혈족, 4촌 이내의 모계 혈족, 남편의 8촌 이내의 부계 혈족과 4촌 이내의 모계 혈족, 처의 부모가 포함되고 있는데,
 - 실정법에서는 각 법률마다 유족의 범위를 민법상의 친족과 다르게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각 법령에서 법적 목적과 정책 목표를 고려하여 유족의 범위를 정함에 따른 것임.
- 동 조례안의 경우는 아래 [표4]와 같이 각 법률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유족 및 가족의 범위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살리면서 과도한 재정 부담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되어 적절한 범위 구성이라 사료됨.

[표 4] 유족의 범위 관련 법령 현황

관련 법령	내 용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1.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3.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4. 손자녀(孫子女,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5.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군인연금법 제3조(정의)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며,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다만, 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은

5)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6)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p>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같다)</p> <p>2. <u>자녀</u>(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p> <p>3. <u>부모</u>(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p> <p>4. <u>손자녀</u>(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p> <p>5. <u>조부모</u>(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p>
<p>국가유공자법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p>	<p>1. <u>배우자</u>(사실혼 포함)</p> <p>2. <u>자녀</u></p> <p>3. <u>부모</u></p> <p>4. <u>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u></p> <p>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p>

다. 시장의 책무 (안 제5조)

- 안 제5조는, 시장에게 공사상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지원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재원의 확보를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이는 서울시민을 위해 위험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서울시가 그 책임을 다하여 유족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소방공무원에게 적극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업무 집중 및 목표달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조치라 사료됨.

라. 지원 계획의 수립 (안 제6조)

- 안 제6조는, 시장에게 공사상공무원과 그 유족 및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 지원계획에는 소방공무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 조사, 공상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 공사상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시책, 공상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조치계획 등을 포함토록 하고 있음.
- 다만, 단서조항으로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조례」 제5조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 이는 중복을 회피하기 위한 장치로 일원화된 계획 수립과 행정의 통일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되어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

마. 순직공무원 추모사업 및 유족 지원 등 (안 제7조, 제8조, 제9조)

- 안 제7조는, 시장에게 순직소방공무원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모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안 제8조는, 시장에게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의 복지 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자녀 장학금 및 유족의 건강검진 지원을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안 제9조는, 시장에게 공사상소방공무원의 유족 또는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해 진로·직업 상담 등 취업 지원을 하고 이를 위한 창업 상담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먼저 ‘추모사업’의 경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3.3.1일자로 개정7)되면서 법 시행일(‘94.9.1) 이전에 사망한 소방공무원(위험순직)에 대하여도 적용토록 함에 따라
 - ‘94.9.1일 이전에 사망한 ‘위험순직(23명)’ 중 20기(선영)에 대하여 국립묘지로의 이전 안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지원을 유도하는 적절한 조치라 사료됨.

[표 5] 국립묘지 등 안장 현황

구분	인원 합계	위험순직					일반순직				
		소계	대전	서울	호국원	선영	소계	대전	서울	호국원	선영
합계	88	45	20	3	1	22	43	-	1	-	42
94.9.1.이전 (※ 20기 이전 안장 필요)	41	23	2	0	1	20	18	-	-	-	18
95.9.1.이후	47	22	18	3	-	1	25	-	1	-	24

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가. ~ 사. (생략)

아.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재난·재해 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정한 실습훈련과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방지원활동 및 제16조의3제1항의 생활안전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자. ~하. (이하 생략)

- 다음으로, 순직공무원 자녀 장학금, 유족의 건강검진 지원, 취업지원 및 창업 상담 등의 경우는 유족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지원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이해되어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
- 다만, 본 조례안의 발의자인 박성연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749호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8조의2(후생복지사업의 지원)에도 순직소방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내용이 중복해 규정되어 있는바,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조례의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 관련 내용을 본 조례안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임.

[표 6] 본 조례안과 수정안 조문대비표

본 조례안	수 정 안
제8조(순직소방공무원 유족 지원) ① 시장은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의 복지 증진과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의 장학금 지원 2.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의 건강검진 지원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규모와 절차,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순직소방공무원 유족 지원) ①----- ----- ----- -----. 1. ----- 2. ----- 3.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의 위로금 지원 ② ----- -----

바. 경과조치 (부칙안)

- 부칙안에서는, 조례의 적용과 관련해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에 대하여 조례안 시행 이전에 발생한 순직·공상 순직자의 유족에 대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동 조례안의 제정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합리적인 조치라 사료됨.